2025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2. 21.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ㅁ지모조	l
1.	ᅩᆸᆿ-	ī

□ 지역 영화제, 영상 관련 문화콘텐츠 행사 개최 지원을 통한 도니 영상콘텐츠 유통/확산 기여
□ 영상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영상콘텐츠 생태계 확장
2.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5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모집
□ 운영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1. 21.(금)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별도
□ 공고기간: 2025. 2. 21.(금) ~ 3. 18.(화)
□ 접수기간: 2025. 2. 21.(금) ~ 3. 18.(화) 17:00까지
□ 지원대상: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에서
진행하는 영화・영상 콘텐츠 행사의 도내 주최자
(단체 또는 프로젝트 팀 포함)
□ 지원내용: 영화·영상문화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4개 행사 내외(총 85백만원) ○ 행사 규모, 계획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 행사별 차등지원 ○ 총 예산 범위 내 지원과제 개수 조정이 가능하며 적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요건

구 분	일반지원 신규지원			
공통요건	- 공고일 기준 제주도 소재 기업 및 법인단체(프로젝트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행사 운영 실무자(PM) 배정 필수 - 2025. 11. 21일 내 폐막 완료 후 28일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가능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주관 단체가 신청			
개최실적	1회 이상 연속 개최 실적이 있는 행사	행사 신규 개최		
행사기간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개·폐막식 포함 1일 이상 개최		
유통 콘텐츠편 수	10편 이상	5편 이상		
관객수 기준 (최근 실적 기준)	100명이상	없음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10% 이상 필수 ※ 자기부담금 미 확보시 선정 취소			
신청 최대 지원금	최대 3,000만원 ※ 최종 지원금은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최대 500만원		

% 유통 콘텐츠: 행사 추진을 위해 확보한 영화·영상 IP 또는 저작권 등을 의미함

□ 제외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조건	- 이미 제주도(지방비) 예산을 지원 받은 행사(국비 및 제주 및 서귀포시 예산 인정) - 진흥원 및 도내 유관기관 중복 지원 불가 - 전년도 참여 행사나 유사사업에 제재조치로 신청 제한을 받은 단체 - 행사의 공익성이 떨어지거나 참여자가 특정인일 경우 - 공익의 목적이 아닌 영리 목적이거나, 단순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일 경우 - 행사가 아닌 커뮤니티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일반 관객이 없는 프로그램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과 다를 경우(용역 대행) - 특정 정치,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사 - 1개의 단체가 2개 이상의 행사 지원 신청 불가 -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및 법인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의무사항

구 분	일반지원	신규지원
의무사항	- 교부신청 시 지원금의 100%에 해당되는 (예산 외 부담, 보험금액 100%, 보험기긴 -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중간점검 필수 침 행사 홍보물, 보도자료 등에 지원 사실 ※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명 표기, 제3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결과 및 정산보고, 증빙자료 제출(지원급 - 성과물 및 정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원 -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 이자, 불인정액 - 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른 집 행사 종료 이후에도 정보 제공 요청 시	: 협약기간 종료 후 + 60일) 상석(운영 실무자 PM 필수 참석) 표기 필수 주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용, 표기 안 할 금 및 자기부담금) 용할 수 있음 반납의무 집행 및 정산 진행

□ 지원범위: 행사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 비목	내 용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 인력 인건비 ※ 인건비는 지원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편성 ※ 단체 대표, 임원진, 상근직원의 인건비 집행 불가
임차비	- 행사 공간 대관비 - 행사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 자산취득을 위한 구입 절대 불가
전문가활용비	- 강연, GV 등을 위한 강연비 - 번역 등 전문인력(프리랜서) 활용비
수수료	- 저작권, 상영료, 배급료 등 콘텐츠 확보를 위한 취급수수료
행사홍보비	- 온/오프라인 홍보비 -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일반용역비	- 행사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여 행사 촬영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할 경우

- ※ 협약 및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불인정
- ※ 지원범위 내에 집행하거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항목 불인정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 ※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붙임 4]
- ※ 단일 지출 1건당 총 예산의 30%이상 배정 및 지출 불가
- □ 운영절차



□ 사업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협약체결 및 사업간담회	- 협약서 작성 및 체결 - 사업 운영 주의사항 안내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방안 안내 - 통장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증보험증권 제출
중간점검	- 협약 기간 中 중간 시점에 점검 ※ 행사일정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음 - 행사기간 확정 및 사전 홍보물 여부 확인 - 진흥원 내부 보도자료 및 홍보 지원 - 안전관리 종합대책 제출
현장모니터링	- 행사 개최일 참석 및 모니터링 - 도민참여형 영상문화 육성·홍보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검토 - 집행잔액, 불인정 금액, 이자수익 확인

※ 협약대상자는 진흥원의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함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O 접수일정
 - 사업공고: 2025. 2. 21.(금) ~ 3. 18.(화)
 - 접수기간: 2025. 2. 21.(금) ~ 3. 18.(화) 17:00까지

O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구분	주요내용
이메일 접수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접수처: ☑ long9977@ofjeju.kr ○ 파일명 및 메일제목: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 신청서_000(단체명) ○ 파일형식: 제출서류 모두 ZIP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O 제출서류

구분	작성 내용	제출형식	항목	비고
	① 지원신청서(붙임2)	스캔파일(pdf)		
	② 수행계획서(붙임2)	hwp/pdf		
	③ 수행단체소개서(붙임2)	hwp/pdf		
지원	④ 정부지원 수혜실적(붙임2)	hwp/pdf		
신청서 및	⑤ 사업비(붙임2)	hwp/pdf		
* 수행	⑥ 위탁사업계서(붙임2)	hwp/pdf		붙임2 양식
계획서	⑦ 자기부담금 확약서(붙임2)	스캔파일(pdf)	공통	작성 후
	⑧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2)	스캔파일(pdf)	00	1개의 파일로
	⑨ 평가위원추첨표(붙임2)	스캔파일(pdf)		ᆈᆯᅩ 제출
	⑩ 참여제한 체크리스트(붙임2)	스캔파일(pdf)		
	①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붙임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첨부	스캔파일(pdf)		
	⑫ 국세 완납증명서(붙임2)	pdf		
첨부	③ 지방세 완납증명서(붙임2)			
서류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붙임2)	pdf		
	⑤ 직전년도 신청사업 실적증명자료 각 1부.	pdf	일반지원	ا ۱ الت
	⑩ 최근 3년간(2022~2024) 유사사업 실적증명자료	pdf	신규지원	1개의 파일로
발표 자료	⑰ 발표평가 PPT(붙임3)	PPT/PDF	공통	제출

[※] 실적증명 자료 : 실적증명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등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단순 홍보물 불인정)

○ 작성요령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 [붙임 2] 2024 영상문화육성지원사업 제출서류(양식) 및 붙임자료 활용
-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는 작성서식(A4용지 종 방향) 작성
- 제출서류 2번 수행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 붉은 색 글자는 삭제 후 제출
-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 참여기업 작성부분 모두 삭제 후 제출
- 칸이 부족할 경우, 확장하거나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제출서류 5번 사업비 작성은 [붙임4] 사업비 산정 기준 파일을 참조
- 작년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평가 기초 자료로 사용

발표자료 작성 요령

- [붙임 3] 발표자료 작성가이드 활용
- 발표자료는 총 20페이지 이내로 작성(발표시간 15분에 맞게 작성)
- 표지, 목차, 내용으로 구성(Page 3부터 작성 후 제출, page 1,2는 삭제)
- 제시한 양식 외에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발표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목차 및 내용을 변경 및 간략화 가능
- 신청단체에서 발표 자료 양식(PPT)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
- 발표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행사목적 및 추진배경(기획의도)
- 단체 및 대표자 소개
-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KPI, 마케팅, 차별성 등)
- 행사의 성과예측 및 비교(작년 대비 개선사항, 예측성과 등)
- 기타자료(추가자료)
- 발표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목차 및 내용 간략화 가능
- 행사 참여인원, 유/무료 관람객 예측, 행사(상영) 횟수 및 관객수 등 행사에 대한 계량적인 결과 예측
- 작년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평가 기초 자료로 사용
- 이미지, 도표,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여 시각화

4. 선정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2025년 3. 25.(화) 14:00 (예정)

□ 심사방법

적격심사

- 필수 제출 서류 확인(적합여부)
- 사실 여부 및 제외 조건 확인
- 미적합일 경우 발표심사 제외

서류•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 심사 후 발표심사 진행
- PT 발표심사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일반지원) 서류·발표심사 배점항목

배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서류	사업계획의 적절성	- 운영 조직의 전문성, 인력, 행사 규모의 적절한가? - 전년도 사업 수행 평가	20점
평가	예산계획의 적절성	- 적절한 예산 구성 및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이 있는가?	20점
발표 평가	지속가능성	- 행사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지속유지될 수 있는가? - 이전 운영 결과 대비 올해 개최 계획이 경쟁력 있는가?	20점
	지원적합성	- 도내 지역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제주지역영화 여부) - 지원이 필요한 행사인가?	20점
	사회기여도	- 지역 내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가? - 도민 문화향유(관객 실적)에 기여가능한가?	20점

□ (신규지원) 서류・발표심사 배점항목

Н	H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서류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운영 조직의 전문성, 인력, 행사 규모의 적절한가?	20점
평가	예산계획의 적절성	- 적절한 예산 구성 및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이 있는가?	20점

배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지속가능성	- 행사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지속유지될 수 있는가? - 주최 단체가 개최 능력이 있는가?	20점
발표 평가	지원적합성	- 도내 지역과의 연관성이 있는가?(제주지역영화 여부) - 지원이 필요한 행사인가?	20점
	사회기여도	- 지역 내 영화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가? - 도민 문화향유(관객 실적)에 기여가능한가?	20점

□ (공통) 가점항목

배점항목		심사 내용	배점
	사회취약 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자) / 사회적기업 인증	3점
추가 가점	장애인 계층	장애인 계층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ESG 교육이수	- 제주콘텐츠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기업 ※ 대표자, 과제책임자 이수 필수	1점

□ 선정기준

- O 심의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고득점순 선정
- O 동점 발생 시 사회기여도 배점을 기준으로 고득점 순 선정
- O 예산의 적절성, 총 지원금 대비 신청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 점수 집계 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
- 집계점수 60점 이하는 부적격 처리 ※ 가점 미부여

□ 지원취소 및 환수조건

구 분	내 용
행사운영	- 중요한 변동사항(PM 변경, 예산변경, 사업변경) 발생 시, 진흥원에 미보고할 경우 - 중간점검 등 진흥원의 업무 협조 요청에 미응답, 미조치 등 비협조적일 경우 - 운영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와 계획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경우 - 행사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개최일을 사유 및 통보 없이 변경할 경우 - 선정 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사업기간 동안 범죄로 기소되거나 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일 경우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제출한 계획서 및 지원사업 운영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미개최, 결과보고 및 정산 미수행 등) - 협약체결 시, 약정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지원금을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

※ 상기로 인해 취소될 경우 3년간 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2025년 2월 21일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5.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주콘텐츠진 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한 내 행사를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진행,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이자포함 금액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 행사가 중단 또는 미 개최된 경우 사유별 제재 조치 시행
-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

6. 문의처

담당부서	이메일	전화
콘텐츠확산팀	long9977@ofjeju.kr	064)735-0621